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32호
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6호(2010.08.26.)로 결정·고시된 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6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
가. 해제기간 연장구역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비고
기정	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	중구 입정동 237일대	12,316.6	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6호 (2010. 08. 26)

나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

구 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
기정	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	중구 입정동 237일대	12,316.6	2017. 02. 01
변경 (연장)	수표 도시환경정비구역	중구 입정동 237일대	12,316.6	2019. 01. 31

※ 권고사항 : 향후 정비계획 변경시 연접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것.

2.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

3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(02-2133-4635), 중구 도심재생과(02-3396-5772)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33호
**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
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(2016.8.25.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0(공무원8단지-강남구 개포동 611-1번지 일원)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7.4.12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」 제30조